

제조관리자
 수입관리자
 안전관리책임자
 관리약사

변경신고서

※ [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고인 (대표자)	업소명	허가번호
	성명	생년월일
	업소 소재지	(전화번호 :)

변경내용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성명		
생년월일		
주소		
면허번호 또는 승인번호		
변경일		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구분	관리약사 변경의 경우	제조관리자, 수입관리자,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의 경우	수수료 1,000원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	1.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 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1부 2. 변경된 자가 「약사법」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허가증 2.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	허가증 또는 수입자 확인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질 차

